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요구

제 목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용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 뇨처리시설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1]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

지원	지원대상 농가수	지원조건		사업예산(딘	위 : 천원)	주요사업	
농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一五八日
3	농가	국 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108,000	17,7500	17,750	72,500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스 키드로우더 구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7조제1호1)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

¹⁾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종류

⁻ 농업용(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부직 포, 배지, 양수기, 볍씨 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화훼·야생용 종자류, 채소봉지, 버섯용 재배용기, 작물 지주대, 무인헬리콥터, 로더, 굴삭기, 동력체초기, 고압세척기, 저온저장고, 농축산용 환풍기, 플라스틱 수확용상자,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 양파·마늘망, 팽연왕겨, 탈봉기, 소분망)

⁻ 축산용(톱밥,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악취제거기,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희석제, 인큐베이터, 출하돈 선별기, 보온등 컨트롤러, 쿨링패드, 워터컵, 바닥재, 유해동물포획기, 착유용 라이

자, 부직포 등을 농가가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지원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기관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확인(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하여 이를 사업비 정산 시 공제하거나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스키드로우더 장비구입/단가 36백만원)의 지원대상자 3명이 아래 [표2]와 같이 농업인이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받았는데도 이를 사업 정산 시 공제하거나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227,240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표2]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회수대상 금액 현황

<단위 : 원, %>

	지원	환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회수대상 금액				
주 소	시전	완급	구가가지제	외구대성 급찍			비고	
1 -	대상자	일자	환급금	계	국비	지방비	(환급비율)	
합계	3명		9,818,181	3,227,240	1,613,620	1,613,620		
○○길 00-00	000	2015.11.20	3,272,727	1,075,620	537,810	537,810	국 비: 20	
OOO2 000-0	000	2015.11.20	3,272,727	1,075,620	537,810	537,810	지방비 : 20 자방비 : 20 자부담 : 60	
○○○길 00-00	000	2015.11.20	3,272,727	1,076,000	538,000	538,000	N-0.00	

※ 부가가치세 환급대행기관 : ○○축산농협

너,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조사료 생산용 네트)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시정]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지원한 사업비를 재정산하여 사업비 집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227,240원(국비 1,613,620원, 지방비 1,613,62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